<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안내문>

- 1. 제공해드리는 안내문은 모두 꼼꼼히 읽으셔야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활동을 전제로 하여, 안내문을 읽지 않으셔서 발생한 불이익을 감해드릴 수 없습니다.
- 2. 3.20(목)까지 1회차 보고서 제출하셔야합니다.
 -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20.3.1~20.3.20 기간 중 활동한 내용만 인정되며, 첫 보고서는 가급적 워크넷 심리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주20시간 이하 근로 보고 방법: 대상기간(20.3.9~20.3.20)
 - ①근로계약서 제출
 - ②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여러 곳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사실신고서'제출. (온라인청년센터→청년소식→공지사항→'서식'검색→20.3.5 수정 서식모음 중 '근로사실신고서'활용)
 - *비교: 2회차 보고서 대상기간(20.3.21~20.4.20)
- 3. 지원금 사용한 영수증만 구직활동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 사용을 못한 상황에서도 계획서 내용을 이행한 것만으로도 증빙하면 됩니다. (첨부해드린 zip 파일 중 보고서작성가이드 & 보고서 첨부서류 제출방법& 이 안내문 2~3페이지 참고)
- 4. <2020년 1월1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 법 시행으로 인해 20.1.1 이후 지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부정수급 처분 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5배+ 해당기간 발생 이자'를 환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배+이자로 부정수급일 경우 큰 영향을 받게 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진신고자의 경우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 5. 필요 시 메일과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원활한 정보전달을 위해 워크넷 회원정보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메일: gmail은 에러가 다수 발생하여, 가급적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변경

문자: 문자수신 허용

- 6. 다음의 경우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1. 2.12(수)까지 예비교육 미신청자
 - 2. 온라인 교육 수강확인서 미제출자
 - 3. 2.14(금)까지 협약서 미제출자
 - 4. 2.25(화)까지 카드 미발급자

중요-구직활동보고서 준비방법 및 유의사항

1. <3월20일 1회차 보고서 준비 시 '워크넷 심리검사'> 활용

워크넷(work.go.kr) →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 직업선호도검사/구직준비도검사/직업가치관검사 중 적합한 심리검사 1개 실시 → 심리검사 결과 조회 → 첫 페이지 캡처(심리검사명, 본인이름, 검사일시) → 구직활동보고서 세부내용 중 하나를 임의로 정해서 심리검사 실시로 본인에 대해 어떤 부분을 알게 되었는지 반드시 기재 및 캡처 파일 업로드 → 보고서 하단 부분의 '기타사항'란에 심리검사 결과 올린 곳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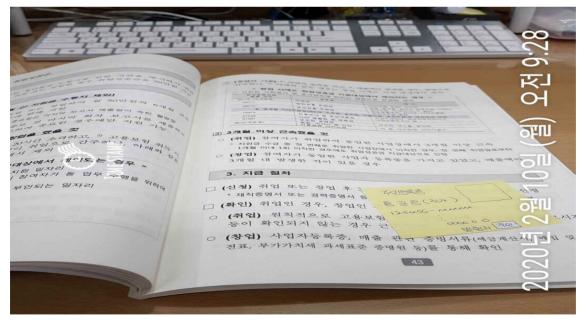
2.구직활동 계획서 중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 개인공부, 스터디참여하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작품완성하기,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또는 수정하기, 자기소개서 전략세우기, 채용공고 분석하기, ~에 대해 알아보기, 자료정리하기, 최신동향 파악 등

위 내용의 경우, 활동을 하시고 최종결과물을 올리시는 것은 인정 불가

예: 완성된 포트폴리오 파일 제출, 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 완성된 작품사진 제출, 전략세우기나 분석한 내용에 한 보고서 제출

아래와 같이 활동 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해주셔야합니다. 날짜가 표기되는 방법은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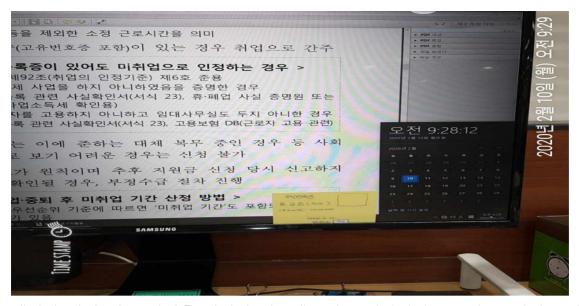


사진과 같이 3가지 요소가 확인되어야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1.배경으로 활동내용(예: 개인공부)

2.활동날짜

3.본인여부(예: 신분증, 지원금카드 등)



예시와 같이 찍은 사진을 날짜가 다르게 3컷 준비하셔서, pdf나 zip파일로 제출하시고, 스터디나 기타 활동은 활동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 3. 단순 물품 구매는 인정이 안 됩니다. 취업과 관련된 도서구매 외 아이패드, 에어팟 등 물품 구매 영수증만 첨부하시면 부실이 됩니다. 구매한 물품으로 활동하는 사진을 위 2번과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4. 구직활동계획서의 체력단련 인정 범위 채용공고에 체력시험이 포함된 직종만 체력단련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예)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체력단련을 한다.(O)
 - 예) 사무직으로 구직 중이나 체력이 약해 체력단련을 한다.(X)
- 5. 근로를 제공하며 경력치를 높이는 직종 유의사항. 배우, 모델, 사회복지, 상담 등 경력관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됨.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근로신고 대상이며, 주20시간 이상이신 경우는 취업종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주20시간 이하 근로의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꼭 제출하셔야 하며, 주20시간 이하 근로내용만 구직활동 증빙자료로 올리면 부실이 됩니다.
- 6.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 미신고시 보고서는 부실처리 되며, 결제취소를 했더라도 신고의무는 동일합니다.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했더라도 마감일(매달20일)전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수정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 보고서의 구직활동 준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꼭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